

2023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「임차료 지원사업」 공고

(재)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화성시 예술인·예술단체의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<2023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>사업을 공모합니다. 관심 있는 관내 예술인(단체)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. 2. 1.
(재)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

〈 공모 주요사항 〉

구분	내용
사업명	2023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「임차료 지원사업」
대상	화성시 소재의 창작 공간(작업실, 연습실 등)을 임차 중인 관내 거주 전문 예술인 및 화성시 전문예술단체
공고 및 신청기간	2023. 2. 1. (수) ~ 2023. 2. 24. (금) (24일간) 2023. 2. 6. (월) ~ 2023. 2. 24. (금) 17:00까지
신청방법	온라인 신청(이메일 접수)
지원 내용	1인(단체) 당 창작공간 월 임차료의 90% 지원, ※ 월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기준 ※ 보증금, 관리비,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 임차료만을 지원
지원 규모	1인(단체) 당 지원 금액 최대 450만원 최대 9개월(2023.4.~12)분, 월 최대 50만원 한도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「임차료 지원사업」
- 사업기간 : 2023.1.~2023.12.
- 사업목적
 - 화성시 관내 예술인(단체)에게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
- 사업내용
 - 화성시 관내 예술인(단체)의 예술 활동 기반이 되는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
 - 1인(단체) 당 화성시 소재 창작 공간 월 임차료의 90% 지원
(월 최대 50만원 한도, 최대 9개월분, 최대 450만원)
- 사업절차



- 사업예산 : 71,000,000원(금칠천일백만원)

2. 추진방향 [전년도와 달라진 점]

- 전년 대비 변동사항

구분	2022년	2023년
지원 내용	1팀(인)당 화성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90% 지원 (최대 9개월, 총 500만원 한도)	1팀(인)당 화성시 소재 창작공간 임차료 90% 지원 (월 최대 50만원, 최대 9개월, 최대 450만원)
심의	외부 심의위원 구성 서류, 인터뷰 심의	외부 심의위원 구성 서류, 인터뷰 심의 내 임차 공간 촬영 링크 첨부로 공간(현장) 심의 추가
사업 관리	월별 활동보고서 제출	최종 결과보고서 1회 제출(임차료 지원 공간 내 시민에게 환류가능 한 예술 활동 성과 포함)
지원(목표) 건수	12건	15건

3. 공모안내

□ 공모개요

○ 지원대상

- 화성시 소재의 창작 공간(작업실, 연습실 등)을 임차 중인 관내 거주 전문 예술인 및 화성시 전문예술단체

○ 신청자격

■ 아래 1,2,3,4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

1. 화성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여 예술창작공간으로 사용 중인 화성 거주 예술인 및 화성시 소재 예술단체 ***하단 유형별 자격 참고**
2.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에 한해 신청 가능(신청인 본인 또는 단체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명 모두 일치)하며,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함
3. 최근 3년(2020~2022)간 예술 활동 자료 및 성과 요약 제출이 가능해야함 (예술활동 지속성 확인을 위함)
4. 공고일 이전 월세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야 하며, 임대차계약서 상 2023년 12월까지 운영·사용이 가능해야함 (단, 계약 연장 및 공간 이전에 따른 신규 계약 발생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)

* 유형별 자격

예술인	예술단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-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- 예술인 증명 미등록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증명 등록자에 준하는 실적 증빙이 가능한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성시에 등록된 예술단체 -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- 전문예술인의 구성 비율이 50% 이상인 단체

※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

(개인/단체 간 중복지원 불가 및 공고일 이전 기준 발급분만 인정, 유효기간 확인)

○ 지원 제외대상 및 제한사항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·단체 -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간을 임대한 개인·단체 ※ 공유오피스 및 시간/월 단위 대여전문 연습실 등 전문 임대사업자 운영공간, 임대인의 직계존비속, 신청자 소유(단체원 포함)이거나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 공간 등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- 전세계약 공간 또는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경우 제외 -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지원자의 관계가 친인척인 경우 지원 불가 ※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- 정치·종교 활동 목적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개인·단체

- 학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-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·단체
- 정산서 미제출 개인·단체 또는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·단체
-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·단체
- 국고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은 유사사업(화성시청, 화성시문화재단, 경기문화재단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문화번역원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)
- 정치적, 종교적, 상업적 목적의 사업 *목적한 바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불가
- 그밖에 이와 상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
○ 지원내용

세부내용	지원규모
1인(단체) 당 창작공간 월 임차료의 90% 지원, 최대 9개월 (2023.4.~12)분, 월 최대 50만원 한도, 지원 금액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총지원금 : 71,000천원(칠천백만원) ■ 선정규모 : 연간 15건 - 최종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상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지원 ■ 지원금액 : 1인(단체) 최대 450만원

【예시】

월 임차료	총 임차료 (9개월 기준)	총 임차료의 90% (9개월 기준)	예상 지원금 (월 최대 50만원 한도 * 9개월 기준)
40만원	360만원	324만원	324만원
50만원	450만원	405만원	405만원
55만원	495만원	445만5천원	445만5천원
100만원	900만원	810만원	450만원(최대)

- 선정된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임차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지급
- 선정 후 매월 임차료 납입명세(이체내역확인증 등) 의무 제출
- 임대차 계약서류 등 허위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책임 부담
- ※ 사업 종료 시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

□ 공모일정

구분	일정	비고
공고기간	2023. 2. 1. (수) ~ 2023. 2. 24. (금) (24일간)	
접수기간	2023. 2. 6. (월) ~ 2023. 2. 24. (금) 17:00까지	
심의	2023. 2. 27. (월) ~ 2023. 3. 9. (목)	
결과발표	2023. 3. 10. (금)	
교부/사업운영	2023. 4월부터/2023.4월~12월(9개월간)	
정산	2023. 12월	
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

□ 공모·접수

- 광고방법 :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
- 접수방법 : 지정양식에 따라 전자메일 접수(artistsupport@hcf.or.kr)
- 제출서류

구분	지원 시	선정 이후 제출
공통	- 지원신청서(활동계획서, 공간현황자료, 신청인(단체)소개서, 예술활동 자료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)	- 기 제출서류 원본
	- 임대차계약서 사본 ·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에 한함 · 계약자와 신청인 본인이 동일해야함 · 공간사용 목적이 사업계획과 부합해야함 · 계약서상 향후 2023년 1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해야함	- 임대 계약 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 (* 해당자에 한함)
	-	- 국세납증명서 - 지방세납증명서
예술인	- 공고일 현재 유효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예술인패스 ※ 예술인 증명 미등록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증명 등록자에 준하는 실적 - 최근 3년(2020~2022)간 창작활동 자료 및 성과 요약본 필수 제출	-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내 발급)
예술단체	- [택1] 고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-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(*해당단체에 한함) - 최근 3년(2020~2022)간 창작활동 자료 및 성과 요약본 필수 제출	

□ 유의사항

- 지원자는 본 사업이 지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- 제출 서류의 부정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, 심의에서 탈락한 경우, 별도 통보하지 않음
- 창작공간 임차료 용도 외 지원금 사용 제한
- 지원금은 창작공간 임차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- 국·시·도비로 창작 공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, 선정 이후라도 해당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동일 예술인(예술단체)가 (재)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사업의 중복 불가
- ※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이 되었을 때, 본 임차료 지원사업과 타 사업 중 택1 하여야 하오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4. 심의안내

□ 심의절차

단 계	내 용	일 정
↓		
심의위원 구성	- 문화예술분야 중심 선정 -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요청	-
↓		
[1차] 행정심의	-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· 구비 서류 등 필수 제출 자료 확인	2023. 2. 28.(화) ~ 2023. 3. 2(목)
↓		
[2차] 선정심의위원회 심의	- 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자(단체) 심의 · 서류 평가 및 지원자 인터뷰 심사 진행 등 · 심의기준에 의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표 채점 및 날인 - 최종 지원자 선정, 지원금 배정 등 · 총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추가 조정	2023. 3. 8.(수)
↓		
최종 결과발표	- 최종 결과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고(hcf.or.kr)	2023. 3. 10.(금)

□ 심의기준(안)

구 분	기 준	배 점
자격 평가 (30%)	관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·단체인가?	10
	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	10
	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?	10
운영 계획 평가 (40%)	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?	20
	창작공간의 활동내용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?	20
기대 효과 (30%)	창작 공간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 기반 마련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?	10
	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에 미칠 긍정적 기대효과와 지속성이 있는가?	10
	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?	10
총 점		100

□ 선정방법

-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점 평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
- 총점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결정
- 선정 대상자 중 부적격자 발생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지원

4. 운영안내

□ 교부

- 신청기간 : 2023. 3. 15.(수) ~ 2023. 3. 24.(금)
- 신청방법 : 지정양식에 따라 전자메일로 접수(artistsupport@hcf.or.kr)
- 제출서류 : 교부신청서, 통장사본 등
- 안내사항
 - 지원금 교부는 임대차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함
 - 임차료 이체 시 관련 내용 송금 메모 사용 권장
 - 재단 지원금 90%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부담금 의무 사용으로, 매월 자부담금 10% 입금 확인 후, 월별 지원금을 교부함

□ 사업관리

- 보고서 제출
 - 22년 사업 운영시 월별보고서 간소화에 대한 의견 다수
 - 23년 예술창작팀에서 예술인지원팀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기존 예술 창작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예술인 활동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

2022년	2023년
매월 창작활동 보고서 제출	최종 정산 시 정산·결과보고서 제출(1회)

- 단, 임차료 지원에 따른 결과에 시민에게 환류 가능한 예술 프로그램 운영은 의무 사항임
- 모니터링
 - 연 1회 모니터링 실시
 - 창작 공간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공간 활용 여부 및 관리 현황 등 점검

□ 정산관리

- 사업 및 정산기간
 - 정산기간 : 2023.12.15. 이전
 - 정산방법: 정산·결과보고서, 성과물(결과물) 제출

- 임차료 납입 증빙 자료(계좌이체확인서 등)는 매월 제출 필수

* 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자 대상 교부·집행·정산과 관련된 세부 안내 내용은 선정 이후 선정자에게 [임차료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및 관리 지침] 별도 안내

□ 지원취소

- 사업 선정 이후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

1.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, 지자체 등의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
 2. 지원금을 임차료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3. 신청 내용에 거짓이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
 4. 임의로 운영을 중지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
 5. 소요되는 임차료 중 자기자금을 부담하지 못 하는 경우
 6. 예정된 공간(시설) 등을 사용할 수 없거나 원활한 이용이 곤란한 경우
 7. 사전협의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* 기타 위와 상응한 사유로 간주되는 경우

□ 기타문의

-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예술인지원팀(031-290-4602). 끝.